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4일,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배준영의원)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피지정자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2%p)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며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도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별정우체국은 685국, 3,217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전국 우체국 중 27.2%를 차지하며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94.6%가 별정우체국으로 운영되고 있음.

별정우체국은 읍·면 지역 등 행정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서 우체국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주로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